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2. 12. 12(월)

경상북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43
제안일자	2022. 11. 17.
회부일자	2022. 11. 2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실

경상북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황재철 의원 외 13명

2. 제안이유

-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진실규명, 피해 회복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신청, 자료의 제공 및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2조)

4.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무혁신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감사관)

5.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 2022.11.23. ~ 11.28.(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14호)
- 의견제출 : 없음

6. 검토의견

☐ 제안이유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1954년에서 1987년 사이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 및 가족 중, 해상 조업 과정에서 조난, 표류 및 북한에 의하여 나포되어 북에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어부와 그 가족, 그리고 납북 후 귀환하지 못한 어부로 인하여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거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국가폭력피해자로 규정하고,
- 국가폭력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함.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지원사업, ▲피해회복 지원사업, ▲사회적 인식개선 지원사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국가폭력피해자’ 등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 ‘국가폭력피해자’를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 중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 및 그 가족 중에서 제2조 제4호의 각 목¹⁾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국가폭력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바, 주민등록법상의 거주 외에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진실규명 신청 안내·홍보, 조력 등 진실규명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폭력피해자와 그 유족의 연령대가 고령인 경우가 많음으로 진실규명에 관한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안 제2조4호의 각목은 다음과 같다

가.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형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

나.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으로 인한 확정판결의 선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

다. 남북귀환어부 또는 남북미귀환어부로 인하여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족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진실규명 결정을 통지받은 국가폭력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과 심리상담 및 치료 등 국가폭력피해자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국가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명예회복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함.
 - 납북귀환 어부 간첩사건 등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인식개선과 명예회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도지사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진실 규명 지원사업, 피해회복 지원사업, 사회적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 안 제10조 비밀누설금지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도록 규정함.
 - 이는 국가폭력피해자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민감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수집한 자료가 유출될 위험이 상시 존재해 있는 바,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했던 사람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국가폭력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등에 의해 연행되어 구타,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구체적 물증이나 혐의가 없더라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경북도의 60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제1기(2005~20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신청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인천	강원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합계
사건수(신청인)	38	158	36	32	60	28	352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들의 진실 규명 신청을 원조하고, 진실규명결정이 된 사안에 대하여 재심, 국가 배상 및 형사보상 등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며, 이들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홍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의 지원사업과 지원 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이 매년 1억4천만원 정도 추계되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부담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